

성별에 따른 대학 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 및 인지도 분석 - 대학생과 조교를 대상으로 -

박 옥 임 · 김 정 숙 · 강 희 순

순천대학교 소비자 가족아동학과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 순천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상담실

Actual Condition and Sensitivity Analysis of Sexual Harassment in Campus by Gender

Park, Ok Im · Kim, Jeong Sook · Kang, Hee Soon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on, Korea

Dep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Sexual Harassment · Violence Counseling Center,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and review counter-action for the sexual harassment in campus by revealing current state of sexual harassment in campus relatively weak in sexual discrimination with regard to sexual harassment emerged as social problem serious in our nation. The targets of study were students and assistants in three schools located at Kwangju · Chonnam area, a questionnaire made by pre-researcher was applied to student vs. assistant with regard to sexual 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and current state of sexual harassment, with analysis of material process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WIN 10.0 for verification of χ^2 for identification of difference vs. family and student vs. assistan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th regard to sexual harassment is under following: Firstly, the recognition of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was proved to be aware of be more than half a responders above average, lack of recognition showed significant number requiring establishment of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the responders stated that they could do it alone should be treated in the counseling room in school. Secondly, 28.7% of students and assistants answered that they have suffered from sexual harassment now and before, even a great number of males have experienced such sexual harassment. In case of female assistants, more than half of them suffered from sexual harassment suggesting us significant level of sexual harassment to female assistants. A depth of sexual harassment to assistants should be investigated in a further way by preparing for and establishing concrete preventive actions and researches, mostly suffered by males; In this respect, a preventive training of sexual harassment should be deemed to be provided to males. Thirdly,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of sex education and preventive action against sexual harassment in college, most of elementary, junior, junior high school hardly provide no or inefficient sexual harassment, and they responded that the campus needs its education. As a way to educate campus with sexual harassment efficiently, a special lecture or regular class might be designed for systematic education or sexual harassment through schools counseling room

접수일: 2004년 8월 23일 채택일: 2004년 9월 6일

Corresponding Author: Park, Ok Im Tel: 82-61-750-3671

Fax: 82-61-750-3670 E-mail: parkok@sunchon.ac.kr

might be effective emphasizing upon role of the room according to opinions of responders. The college is required to install such offices or centers as can exclusively manage and take charge of sex education program operation, legal system of anti-sexual harassment, or personnel arrangement for such activities in school by reflecting such result into school for appropriate and efficient education of or counseling to sex.

Key words: gender, campus, sexual harassment

I. 서 론

현대사회의 변화 속도가 급격하게 되면서 직업세계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의 확대와 취업기회의 확장에 따라 직장은 여성과 남성이 직무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면서 그 동안 침묵과 은폐로 가려진 직장 내의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으로 제기되었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써 그 범위는 단순히 지나가는 말에서부터 포옹이나 육체적 접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조홍식 외 2000). 그러나 논자의 주장에 따라 개념이나 포괄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권력의 불평등에서 야기되는 성적 행위'로 약자에 대한 강자의 성적 괴롭힘이라 할 수 있다(김영희 2003).

성희롱(sexual harassment)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1970년부터 미국에서 페미니스트 법학자들의 논의와 판결에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다가 현재 많은 나라에서 법과 판례로 규제하고 있다(김엘립 2004).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성단체의 강력한 요구와 정부의 강한 의지의 반영으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최근 여성부가 2001년 3월 전국 여성공무원 5,8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5은 조사시점에서 1년 이내에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으며, 그 중 4/5는 직장 상사가 가해자라고 답하는 보도(중앙일보 2004. 8. 24) 매우 충격적이었다.

대학에서의 성희롱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998년 5년간의 투쟁 끝에 승소로 끝난 S대 교수 성희롱 사건은 대학 내의 대표적인 성희롱 사건으로 '사회통념상 일상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인식되던 성희롱의 문제를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으로 간주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이나영 1999)고 하겠다.

이 사건으로 촉발된 사회적 관심은 가장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는 대학 내에서 발생되었다는 데에 사회적 충격을 던져 주었다.

이러한 대학 내 성희롱의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위협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로 사회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 대체로 개인적인 문제로 처리 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여 성차별이라 하듯이 성희롱이나 성폭력(gender violence)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의미(정희진 2003) 하는데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애사(sexual history)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면 논의 자체가 매우 성별화(gendered)되어 있어 피해여성은 신고하거나 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 큰 피해가 온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어 극히 꺼려하게 된다(정희진 2003). 이러한 현상은 남성중심 문화권에서 여성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를 노출시킬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용기나 신념이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대학은 교육의 장으로써 주요한 역할도 하지만 구성원들에게는 상호간의 밀접한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터전이기도 하다. 대학생들은 학과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선후배, 동료간의 긴밀한 만남을 통하

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케 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지성의 현장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곳이다. 조교들 또한 대학의 교원으로 교수와는 달리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고용관계 때문에 신분상 어려운 점이 많으나 경력 차원이나 연구보조자로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교수·학생, 교수·조교, 직원·학생, 직원·조교 간에 보이지 않는 권력구조 때문에 성희롱을 더욱 용이하게 하며, 피해자인 학생이나 조교가 자신의 명예와 장래를 걸고 그러한 문제를 공식화하기에는 한계가 뒤따른다.

조은(2003)은 대학 내의 성희롱 문제를 교육생 산자와 소비자의 힘의 불균형으로 진단하고 대학 내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여성교수들이 묵인하거나 침묵해왔으며 이러한 점이 대학 내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의 상당부분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대학 사회의 성찰과 여성교수들의 연대를 촉구하였다.

우리사회의 도덕적 지표로 간주되는 대학 내에서 조차 성희롱 문제가 암암리에 묵과되어 왔고 침묵을 강요해 왔으며, 은폐해 왔던 피해 사실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성희롱 끄덕 없는 대학 2003. 5. 11, 오마이 뉴스; 성희롱 교수 의기 양양, 여성신문 2003. 5. 23; 서울시 시립대 성추행 교수 해임 결정 2003. 10. 20, 오마이 뉴스) 교육 인적자원부와 여성부의 강력한 행정지침에 따라, 최근에 많은 대학들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의 개설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예방 및 사후대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총·학장의 대학 내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극히 형식적인 기관으로만 운영을 할 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학생 교육에 있어서도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 내 성희롱에 대한 실태 및 인지도를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하여 대학 내의 성희롱의 예방 및 대책마련을 모색하는데 일조하여 양성 평등한 성문화(gender culture) 형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성희롱의 개념 및 정의

성희롱에 대한 법적근거와 의미를 보면 남녀 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불용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 학문적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1974년 미국 코넬대학의 Lin Farley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성적관심'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면서 발전해 온 개념이다(여성부 2001).

Friedman(1992)은 '성희롱이란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이 일어나게 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으며, 김양희(1995)의 연구에서는 성희롱을 '성을 소재로 하여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으로서, 불필요하며 불유쾌한 접촉, 용모에 대한 성적 언급이나 농담을 비롯하여 노골적인 성적 유혹과 성적 공격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김경신 외(1999)의 연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뿐 아니라 교육훈련 장소 및 출장지 회식장소 등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직장 관련 사람들 즉 직장상사, 동료, 부하 및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 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 혹은 성별에 기반 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은 말 그대로 성적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단지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관심표명이 아닌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때 성희롱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성희롱은 그 피해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성희롱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기에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희생자 관점에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성희

통의 내용에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unwelcome, unwanted) 행동을 가한다는 뜻도 들어있는데, 성희통의 정의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이라는 표현에 가해자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역시 가해자는 귀찮게 하려는 의도(intention)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었다면 그와 유사한 경우들이 모두 성희통에 해당된다(Fitzgerald, L., 1993, 정해은 재인용).

성희통과 강간 및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성희통의 개념을 성폭력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모든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폭넓게 규정하는 나라(미국, 독일 등)가 있는가 하면, 성희통을 성폭력보다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규정하는 입법례(국제기구의 문서, 프랑스, 일본 등)도 있다(김엘림 2004).

2. 대학 내 성희통의 유형과 특성

대학 내의 성희통이라 함은 혼히 교수와 학생 간의 성희통을 상기시키고 있지만 대학 내 성희통은 교수, 직원, 조교, 학생 간에 여러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대학 내 성희통은 교수와 교수, 교수와 학생, 조교와 학생, 조교와 직원, 상사와 부하직원, 직원과 학생, 직원과 직원, 학생과 학생의 관계에서 일어 날 수 있다. 대학 내 성희통은 직장 내의 성희통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일반 직장과는 달리 대학 캠퍼스라는 특수성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이원숙 2003).

(1) 대학 내 성희통의 유형

대학 내 성희통은 그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 연구실적 인정, 학점, 혹은 학위 등 교수라는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하는 성희통, 즉 대가보복형(quid pro quo)의 성희통이 있다. 그리고 캠퍼스의 학습 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환경악화형(hostile environment)의 성희통은 더욱 많이 있다. 성적 농담, 술자리 강요, 음란물,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포르노 사진 유통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윤가현 2001).

성희통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살펴보면(이원숙 2003) 대가 보복형(quid

pro quo)의 성희통은 예를 들면 성적 제의에 따르면 학점을 올려준다는 제의, 대학원 진학 추천서를 잘 써준다는 제의, 논문지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제의 등 개인의 학문적 혹은 직업상황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에 복종을 하면 향상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직·간접적 합의를 가지고 반응하도록 요구되는 것이다. 환경악화형(hostile environment) 성희통은 예를 들면 강의실에서 반복적인 여성 비하적인 발언,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언급이나 질문, 교수가 자신의 성생활이나 욕망에 대한 반복적 언급, 원하지 않는 반복적, 육체적 접촉 등으로 일명 적대적 환경이라고 하며, 개인의 작업능력 혹은 학생이 학습하거나 대학 내 환경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공격적, 위협적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다수의 성희통은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대학 내 성희통의 특성

대학 내 성희통의 두개의 축은 교수·학생간, 선·후배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이원숙 2003).

1) 교수·학생간 성희통 특성

- 모든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발생되고 있다.
- 주변 혹은 학생 자신에게 성희통 문제가 발생되면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다.
- 믿을 수 없다는 반응, 안타까움, 질타, 동정론, 강력한 처벌 주장, 자성론, 자기비판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지만,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
- 술자리, MT, 졸업여행 등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 성희통 가해자는 남자교수만 아니라 여자교수와 강사인 경우도 있다.
- 가해자 유발론과 피해자 유발론이 공존하고 있다.
- 남학생과 여학생은 소극적인 대처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 성희통이 가시화 되면 적극적인 집단적 대처 전략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 성희통은 학업 및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선·후배간의 성희롱 특성

- 대학생들의 성문화가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대학가의 술 문화는 성희롱의 기회로 악용되기도 한다.
- 애정표현방식, 게임방식 등 여러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 남학생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피해학생의 평판 뿐 아니라 선·후배관계를 손상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소극적 대처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 개인적 및 집단적 차원에서 적극적 대처가 간혹 추구되고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성희롱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연구(한국여성민우회 1993; 장필화 외 4인 1994; 공미혜 1995; 김경신·김정란 1999; 김정만·차석빈 1999; 전영실 1999)나 성희롱의 법적 대책 등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7; 김엘립 1997; 한국여성개발원 2001)등으로 매우 제한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여성부를 주축으로 한 성희롱 예방업무,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가이드, 성희롱 예방 표준교안, 성희롱 예방 클리닉, 자료집 등은 성희롱 예방과 강사 교육을 위한 교재나 자침서 등은 나름대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대학 내의 성희롱에 관한 연구(김혜란 등 1996;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7; 이남숙 1999; 신현옥 2001; 이원숙 2001)도 극히 미흡한 수준에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00)에 따르면 상담소에 접수된 대학 내 성폭행은 모두 75건에 181차례이며, 이 중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경우가 24건에 103회였던 것으로 나타나 대학 내 성폭력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선·후배 사이에 벌어지는 성폭행이 33건에 48차례였으며, 이 중 선배가 가해자인 경우가 31건을 차지했다. 동기간의 성폭행도 16건에 28회나 되었다. 이처럼 성폭력의 경우 성별, 나이, 직위 등 상하관계에 있는 교수나 선배에 의한 피해가 전

체 발생률의 대부분인 8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폭력 발생공간은 여자 화장실, 타대학 대동제, 신입생 MT, 공중전화박스 심지어 학교 주최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장소 등 공동체 모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여학생위원회(2001)가 재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대학 내 성폭력 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35%에 해당하는 78명이 오리엔테이션이나 술자리 등에서 동료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여학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를 경험하거나 목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피해 학생들의 대응에서 조사대상 학생들의 110명인 49%가 '신경 쓰지 않거나 그냥 무시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낸다'고 응답한 학생은 18명인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동 MBC 시사이야기, 2001. 4. 23).

한국성폭력상담소(2002)에 따르면 학교나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 상담건수는 351건으로 전체 피해상담의 11.9%에 해당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오정진·박선영 2003).

대학 내 성희롱 실태조사에 의하면(여성부 2002) 학부 여학생의 39.1%로 성희롱 피해 경험을 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언어적 성희롱인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23.1%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가 23.9%,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행위가 21.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체적 성희롱인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가 13.7%로 나타났다. 또한 이 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가해자는 학부학생이 47.1%, 남자교수가 17.6%, 남자교직원이 15.4%, 남자대학원생이 15.2%의 순서로 나타나 대학 내의 성희롱은 대체적으로 권력이나 지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부 2002).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측정도구는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설문지 문항

은 선행연구(정해운 2000)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연구문제에 맞추어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문항, 성희롱의 실태 7문항, 성희롱에 대한 인지정도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조사대상은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인 J대, S대, Y대 등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남자 98명, 여자 230명) 328명, 대학 조교(남자 37명, 여자 47명) 84명으로 총 412명(남자 135명, 여자 277명)이었다. 총 5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425부였으나 내용이 충실히 못한 13부를 제외한 412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 까지 20일간 실시하였다.

3. 통계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0.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성희롱에 대한 실태 및 인지정도는 단순 빈도분석과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성희롱에 대한 남·녀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tems	Class	N	%
Gender	Male	135	32.8
	Female	277	67.2
Grade	Freshman	125	30.3
	Sophomore	81	19.7
	Junior	96	23.3
	Senior	26	6.3
Major field of study	Teacher Assistant	84	20.4
	Cultural science	113	27.6
	Natural science	184	45.0
	Education	45	11.0
	Art science & physical ed.	12	2.2
Religion	Others	58	14.2
	Christian	147	35.2
	Catholic	35	8.5
	Buddhism	38	9.2
	Others	13	3.2
	None	179	43.4

4. 연구문제

- 1) 성별에 따라 대학 내 성희롱 실태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성별에 따라 대학 내 성희롱에 대한 인지정도 차이를 파악한다

5.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3개 4년제 대학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표집에 있어 한국 대학의 집단전체로 일반화시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대학 내의 성희롱에 관해 조사 대상이 학부생과 조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수, 직원, 조교, 대학원생, 학생 간의 다양한 대상을 표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체 대학 구성원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IV. 연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와 같이 남자 135명(32.8%), 여자 277명(67.2%)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더 많았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25명(30.3%), 2학년 81명(19.7%), 3학년 96명(23.3%), 4학년 26명(6.3%), 조교 84명(20.4%)

으로 1학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3학년, 조교, 2학년, 4학년 순서로 나타났다. 계열은 자연과학계열 184명(45.0%), 인문사회계열 113명(27.6%), 사범계열 45명(11.0%), 예체능계열 12명(2.2%) 순이었고 기타 58명(14.2%)이었다. 종교는 과반수 이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기독교가 147명(35.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이었고, 그 다음이 불교 38명(9.2%), 천주교 35명(8.5%) 순이었으며, 기타 13명(3.2%), 무종교

179명(43.4%)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성희롱실태

성별에 의한 성희롱 실태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성문제로 인한 고민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6.8%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성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48.5%, 여자 46%로 비교적 상당수가 성문제로 고민한 경험이 있음을

Table 2. The difference of state about sexual harassment by gender

Items	Class	Male		Female		Total	χ^2
		N	%	N	%		
Experience for sexual trouble	Yes	65	48.5	126	46.0	191	46.8
	No	69	51.5	148	54.0	217	53.2
Experience for sexual harassment	Yes	30	22.4	88	31.8	118	28.7
	No	104	77.6	189	68.2	293	71.3
Mood state after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Unpleased	16	51.6	617	70.9	771	65.8
	Felt sad	39	9.74	270	2.34	529	4.39
	Misery	2	6.5	11	12.8	13	11.1
	Surprised	3	9.7	5	5.8	8	6.8
	Distressed	4	12.9	4	4.7	8	6.8
	Cried	0	0.0	1	1.2	1	0.9
	Others	3	9.7	2	2.3	5	4.3
Behavior immediately after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Nothing is done	67	18.2	16	18.2	221	18.2
	Turn a deaf ear	84	24.2	23	26.1	313	25.6
	Conversation together	6	18.2	2	2.3	8	6.6
	Express unpleasantness	6	18.2	28	31.8	34	28.1
	Speak "stop"	4	12.1	11	12.5	15	12.4
	Vent anger and leave seat	1	3.0	3	3.4	4	3.3
	Others	2	6.1	5	5.7	7	5.8
Dealing behavior with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Nothing is done	14	42.4	23	27.1	37	31.4
	Write a letter to a assailant	2	6.17	026	0.06	2	1.79
	Change major and society	2	6.1	3	3.5	5	4.2
	Don't meet a harasser	9	27.3	38	44.7	47	39.8
	Counselling with reliable people	3	9.1	16	18.8	19	16.1
	Counselling to consultation office	0	0.0	0	0.0	0	0.0
	Others	3	9.1	5	5.9	8	6.8
Gender of sexual harasser	Male	13	52.0	78	91.8	91	82.7
	Female	4	16.0	2	2.4	6	5.5
	Both	8	32.0	5	5.9	13	11.8
Related laws influences on sexual harassment	Decreased	18	14.6	21	8.5	39	10.6
	No difference made	49	39.8	133	54.1	182	49.3
	Increased	5	4.1	1	0.4	6	1.6
	Have no idea	51	41.5	91	37.0	142	38.5

*p< .05 , **p< .01 , ***p< .001

알 수 있다.

‘성희롱의 경험’에 대한 질문에 전체응답자중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가 전체 412명중 118명으로 28.7%를 차지했다. 남녀별 차이로는 여성(31.8%)이 남성(22.4%)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남성의 경우도 상당수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경험한 이후의 마음상태는 어떠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중 65.8%가 ‘불쾌했다’로 응답했으며, 남녀별 차이에서는 여성의 경우 ‘불쾌했다’(70.9%)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비참했다(12.8%)는 응답자도 나타났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성희롱의 경험으로 ‘불쾌하다’, ‘슬펐다’, ‘비참했다’, ‘놀랐다’, ‘기가 막혔다’, ‘울었다’ 등의 부정적인 경험 등의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의 누적은 ‘울화병’이나 ‘위장병’ 등 보다 심각한 육체적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남녀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수준($p < .01$)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이 발생한 순간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은 전체 응답자중 ‘불쾌하다는 간접적인 의사표현을 하였다(34%)’, ‘화가 났지만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있었다(25.6%)’, ‘당황해서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했다(18.2%)’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별 차이에서는 남자인 경우 ‘화가 났지만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있었다(24.2%)’, 여자인 경우는 ‘불쾌하다는 간접적인 의사표현을 하였다(31.8%)’는 것으로 보아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수준($p < .05$)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이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중 ‘당분간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였다(39.8%)’,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31.4%)’는 소극적인 대처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교내 관련 기구에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대방에게 편지를 썼다’는 1.7%에 불과하며 적극적인 대처방법 등의 방안 모색으로 학내 성희롱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학내 관련기구나 학칙 등의 준비가 시급하다고 본다. 남녀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수준($p < .05$)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중 82.7%가 ‘남성’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남녀혼성(11.8%)’, ‘여성(5.5%)’에 의한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 차이에 있어서는 남자인 경우 같은 동성인 ‘남성(52.0%)’, ‘남녀혼성(32.0%)’, ‘여성(16.0%)’에 의해 성희롱을 당했으며, 여자인 경우는 ‘남성(91.8%)’에 의해서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성희롱 가해자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앞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녀별 집단 간의 유의미한($p < .001$)차이를 보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금지가 규정된 후 학교 내 성희롱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중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49.3%)’, ‘잘 모르겠다(38.5%)’로 나타났으며, 남녀별 차이에 있어서도 남성(39.8%), 여성(54.1%)의 경우 성희롱 금지 규정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금지 규정 후 성희롱에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38.5%로 나타난 것은 아직도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성희롱의 예방교육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남녀별 집단 간의 유의미한($p < .001$)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성별에 따른 성희롱 인지정도

성별에 의한 성희롱 인지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성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의식에 대한 질문에는 남자 40.0%와 여자 36.1%가 ‘아름다운 것이다’에 응답하였고, 남자 30.4%, 여자 34.7%가 ‘인간의 생식수단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의 하나이다’에 응답을 하였으며, 남자 6.7%, 여자 15.9%가 ‘신비스러운 것이다’에 응답을 하였다. 또한 남자 18.5%, 여자 6.1%가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에 응답하였고, 남자 3.7%, 여자 3.6%가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에 응답하였으며, 남자 0.7%, 여자 0.7%가 ‘불결하고 수치스럽다’에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의식에 있어서 성은

Table 3.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about sexual harassment by gender

Items	Class	Male		Female		Total		χ^2
		N	%	N	%	N	%	
Sexual consciousness	Beautiful	54	40.0	100	36.1	154	37.4	22.72***
	Fantastic	9	6.7	44	15.9	53	12.9	
	Method for pleasure	5	3.7	10	3.6	15	3.6	
	Reproductive process	41	30.4	104	34.7	145	35.2	
	Dirty, Shame	1	0.7	2	0.7	3	0.7	
Sexual discrimination	Energy of life	25	18.5	17	6.1	42	10.2	81.96***
	Yes	78	58.6	262	94.6	340	82.9	
	No	55	41.4	15	5.4	70	17.1	
Category of sexual discrimination	Economy	26	21.0	47	17.2	73	18.3	12.00*
	Politics	42	33.9	58	21.2	100	25.1	
	Culture	10	8.1	22	8.0	32	8.0	
	Education	3	2.4	15	5.5	18	4.5	
	Life	35	28.2	114	41.6	149	37.4	
	Others	8	6.5	18	6.6	26	6.5	
Understanding for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Very well	8	5.9	5	1.8	13	3.2	6.12***
	Well	23	17.0	39	14.1	62	15.1	
	Usually	73	54.1	158	56.9	231	56.0	
	Some	26	19.3	62	22.5	88	21.4	
	Never	5	3.7	13	4.7	18	4.4	
Problem solution of sexual harassment	Yes	42	31.1	20	7.3	62	15.1	40.09***
	No	93	68.9	255	92.7	348	84.9	
Judgment for intention of harasser	Yes	74	55.1	107	38.6	181	44.1	10.54***
	No	59	44.4	170	61.4	229	55.9	
Judgment for intention of sexual harassment victim	Yes	77	58.8	104	38.1	181	44.8	15.31***
	No	54	41.2	169	61.9	223	55.2	
Recognition of visual harassment	Yes	11	8.3	51	18.4	62	15.1	7.19***
	No	122	91.7	226	81.6	348	84.9	

*p< .05 , **p< .01 , ***p< .001

아름다운 것이며 인간의 생식수단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성차별의 성희롱 인지정도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2.9%가 여성이 성차별을 받고 있다(82.9%)고 응답하였다. 성별 차이에서는 남성(58.6%)보다 여성(94.6%)에서 성차별을 받고 있다 는 응답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남녀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였다.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분야에 있다고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응답자 중

37.4%가 가족 및 사회생활 등에서 성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정치(33.9%), 생활(28.2%), 경제(21%) 순이었고, 여자는 생활(41.6%), 정치(21.2%), 경제(17.2%) 순이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가족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성차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성희롱 개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남자 22.9%, 여자 15.9%가 '아주 많이 안다'와 '많이 안다'에 응답을 하였고, 남자 23.0%, 여자 27.2%가 '조금밖에 모른다'와 '거의 모른다'에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보통이다'에

남자 54.1%, 여자 56.9%가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과반수이상(56.0%)이 성희롱 개념에 대해 보통정도로 응답하고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성희롱 개념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았다.

성희롱 문제 해결에 대한 인지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희롱 문제는 지극히 사적이어서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남자 68.9%, 여자 92.7%, 전체 84.9%가 '아니다'에 응답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23.8% 높았으며, 남녀별 집단 간에 유의미($p<.001$)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희롱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것으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공식적인 해결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가해자의 의도에 따른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의한 성희롱에 인지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보다는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남자 55.1%, 여자 38.6%가 '그렇다'에 응답을 하였고, 남자 44.4%, 여자 61.4%가 '아니다'에 응답하였다. 남녀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61.4%가 성희롱 판단기준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 견해가 높았으나 남성(55.1%)의 경우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입장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높았다. 그런데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이 생활의 활력소라고 인식되어 있던 현실에서 가해자는 특별히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기 위해 성희롱을 행하지 않으나, 습관적으로 무심코 행해지는 행위들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준다면 성희롱의 법적 규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학 내 성희롱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 내 성희롱 교육이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의한 성희롱에 인지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

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피해를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남자 58.8%, 여자 38.1%가 '그렇다'에 응답하였고, 남자 41.2%, 여자 61.9%가 '아니다'에 응답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55.2%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성희롱으로 판단된다고 응답하였고, 남녀별 차이에서 남성의 경우 58.8%가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 성희롱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가에 따라 성희롱으로 분류가 되므로 성희롱의 법적 규제가 이루어진다. 이는 성희롱 예방교육 및 의사표현 훈련이 부족하고, 성희롱을 사소한 것으로 간주해온 문화, 경직된 위계질서 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시각적 성희롱에 대한 인지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사무실에서 통신으로 음란한 사이트를 혼자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우연히 보았다면,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남자 91.7%, 여자 81.6%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10.1% 높았으며, 남녀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시각적 성희롱 유형에 해당된다. 설령 혼자 보겠다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서 음란 사이트를 본다는 것은 타인에게 언제든지 노출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 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의 4년제 3개 대학의 구성원 중 대학생, 조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대학 내 성희롱 실태 및 인지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별에 따라 성의식 정도, 성차별, 성차별 분야, 성희롱에 대한 문제해결,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의도에 따른 성희롱 판단기준, 시각적 성희롱에 대한 인지정도, 성희롱 경험, 성희롱 경험 이후 마음

상태, 성희롱 발생 순간의 행동, 성희롱 발생이후 대처행동, 성희롱 가해자의 성별, 성희롱 금지 규정 후 성희롱의 변화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대학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의 문제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몇몇 대학들이 성폭력의 개념을 하에서 성희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성희롱에 대한 지식 및 인식 정도가 낮고, 특히 대부분의 가해자인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 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각종 피해를 입고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들의 성희롱의 예방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를 통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 많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성희롱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남성들에 대한 성희롱 실태조사가 없으므로 추후 남녀 뿐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에 대한 여러 측면의 다양한 실태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이라는 조직내부의 다양한 권력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의 대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조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 내 성희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희롱 관련 제 규정의 정비, 성관련 상담과 성희롱 관련 조사위원회 등 전담관련 기구가 총장 직속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영역이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조사대상을 대학 내 다양한 구성원으로 실시하고 조사대상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 조사하며 조사내용도 성

희롱 실태와 아울러 성희롱에 대한 태도, 지식 및 대처방안 등에 전반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신 · 김정란(1999).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변인
분석. *한국가정과학회지* 2(2), 1~16.
- 김엘림(2004). 「성희롱에 관한 법과 판례」. 2004년
도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보수과정. 한국양
성평등교육진흥원.
- 김양희(1995). 직장 여성의 성희롱 경험과 관련정책
에 관한 의식. *여성연구* 제49호,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희(2003). 「대학 내 성폭력 예방의 교육적 접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전국여교수
연합회·교육인적자원부 공동세미나 3-29.
- 김혜란 · 이상균 · 이해은(1996). 대학에서 성적 괴롭
힘의 정의 및 예방.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지*
31(1), 92~113.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제1장 제2
조의2.
- 류진혜 · 김재환(1995). 대학생의 성(性)에 대한 실태
조사. *한양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제8차 학술
세미나자료* 13~49.
- 여성부(2002). 대학 내 성희롱 실태조사.
- 여성부(2003). 성희롱 예방업무 편람.
- 오정진, 박선영(2003). 성폭력 피해배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윤가현(200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 이원숙(2003).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 121~155.
- 이나영(1999). 학교 내 성희롱의 실태와 규제방안.
신라대학교 여성연구논집 제10집 164~169.
- 이혜은(1998). 성적 괴롭힘에 대한 여대생의 대처양
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필화 외(1994) 4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
와 대처방안의 모색. *여성학논집* 제11집 113~
144.
- 전영실(1999).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정희진(2003). 성폭력을 다시 쓴다 - 객관성, 여성운
동, 인권, 한율 아카데미.
- 정해은 · 조희진(2000). 대학에서의 성희롱 실태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오산대 논문집 인문과학*
20, 55~107.
- 조은(2003). 교수 성폭력은 왜 '올바른' 해결이 어려
운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전국
여교수연합회·교육인적자원부 공동세미나.
- 조홍식 외 3인(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 한국성폭력상담소(2000). 대학 내 성폭력관련 정책
공청회 자료집(오정진 · 박선영 제인용).
- 한국성폭력상담소(2002). 200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현황.

- 한국여성개발원(2001). 법적 규제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안동 MBC 시사이야기(2001. 4. 23).
오마이 뉴스(2003. 5. 11, 2003. 10. 21), 여성신문
(2003. 5. 23), 중앙일보(2004. 8. 24).
Fitzgerald, L(1993). Sexual harassment: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workplace. *American Psychologist* 48(1), 34~51(정해은 · 조희진 재인용).

인터넷 참고 사이트

- 가톨릭상지대학 <http://www.csangji.ac.kr/~cyberboy>.
성희롱 예방 캠페인 <http://www.stopsh.pe.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menu1/ing_stat.htm
TALK-IN[여성]. <http://www.talk-in.co.kr/Sexism/sexism.html>. 2000. 5. 15자.